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유럽연합, 2023년 6월 29일부터 산림 벌채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TBT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6월 9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내에서 쇠고기, 커피 등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 규제 조치: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벌채와 무관하고,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 (*) 다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실제 적용 시점은 2024년 12월 30일로 정하고 있음
- 규제 대상 품목: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
-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 부록 1 규제 대상 품목 중 식품 항목

분류	품목명
소	살아있는 소, 쇠고기 또는 소의 식용 부산물(신선 또는 냉장, 냉동), 내장(밀폐용기, 조제 저장)
코코아	코코아두,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코코아 가루,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커피	커피
팜유	팜넛과 핵, 팜유와 분획물, 조유, 팜핵유 및 바바수유, 팜넛 또는 핵의 것(오일 케이크 및 유박)
대두	대두, 채유 적합 종자와 가루, 대두유와 그 분획물, 대두유 추출 오일케이크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2023.06.09

유럽연합, 2023년 7월부터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단, 수입 검사율은 20% 이상 유지)

- 2023년 6월 8일 유럽연합이 발표한 (EU)2023/1110에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하는 수입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됨
- 주요 내용(한국 식품에 대한 변경 사항)
-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 규정」(EU)2019/1793의 부록 2「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목록에서 한국산 식품(식물성 식이보충제 및 즉석 면류)에 대한 수입 규제 요건 삭제
- 해당 규정의 부록 1「공식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목록에 한국산 식물성 식이보충제 및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요건 추가
- 수입 시 검사 빈도 유지(20~30%),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 제출 의무 요건 삭제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번호	원산지	식품 및 사료	CN code	위험 요소	검사 빈도
12	한국	식물성 식이보충제(식품)	Ex 1302 Ex 2106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물	30%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식품)	Ex 1902 30 10		20%

출처: European Union Law,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110, 2023.06.06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2023년 6월 14일부터)



TBT

이슈 바로가기 ▶

-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앞면 영양 표시와 관련한 규정(Resolución 2492 de 2022)」이 시행됨을 발표함
- 적용 대상: 모든 가공식품
- 제외 대상: 단일 성분으로 추가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
- 표시 기준(일부): 앞면 영양 표시는 영양소 함량이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치 이상의 경우 표시

영양소	고체(100g, 반고체 포함)	액체(100mL)
나트륨	≥1mg/kcal 및/또는 ≥300mg/100g (*) 소금/나트륨이 첨가된 포장 생고기의 한도는 300mg/100g	≥ 1mg/kcal 또는 에너지 섭취가 없는 무알코올 음료: 100ml당 나트륨 40mg
포화지방	≥ 포화지방 총 에너지의 10%	≥ 포화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0%
트랜스지방	≥ 트랜스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	≥ 트랜스 지방에서 총 에너지의 1%

- 표시 양식(일부)
- 팔각형 모양에 텍스트만 삽입된 검은색 마크로 변동됨
- 팔각형 내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성분이 많을 경우, 2~5개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라벨 예시 이미지



출처: 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ÓN SOCIAL, RESOLUCIÓN NÚMERO 'a a 2492 DE 2022, 2022.12.13